

「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·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(안 제3조제3항)
- 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 명시(안 제4조)
-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사항 신설(안 제6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 및 세정과와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및 1회 연임 허용과 서면심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연임 규정의 신설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, 서면심의의 근거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·의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관내에 지사가 없는 한국감정원(한국부동산원) 산하 직원을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고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향후 우리 시의 정확한 부동산 현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